

치과위생사의 법적업무범위와 의료인화에 대한 치위생학 전공 학생들의 인식

김명희^{1†}, 임연희², 이경애¹, 김수진¹, 김윤지³

¹울지대학교 보건과학대학 치위생학과, ²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연구원 환경의학연구소, ³한양대학교 보건대학원

Dental hygiene students' awareness of their legal scope and petition for medical personnel

Myoung-Hee Kim^{1†}, Youn-Hee Lim², Kyung Ae Lee¹, Su Jin Kim¹, Yun Ji Kim³

¹Department of Dental Hygiene, College of Health Science, Eulji University, ²Institute of Environmental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Medical Research Center, ³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Hanyang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assess dental hygiene students' and other medical personnel's knowledge of dental hygienists' legal responsibilities. A self-reported questionnaire was conducted for 2 weeks from March 25 to April 9, 2017. One of the main questions focused on the legal scope of practice for dental hygienists according to current medical technicians. A total of 298 subjects' responses were analyzed. We found that 62.1% of the respondents were aware of dental hygienists' legal responsibilities. Of the dental hygiene students surveyed, 93.6% replied that they were aware of other medical personnel's expectations. Responses to 12 legal questions were shown to have different distributions depending upon the level of dental hygienist education. Overall, knowledge of dental hygienist legal responsibilities was more comprehensive for senior students in each legal topic. However, few students (1.7%) answered all 12 legal questions correctly. In conclusion, dental hygiene students' awareness of their profession's legal scope should be improved. In addition, the Korean Dental Hygienists Association needs to more actively promote understanding of the profession's legal scope as well as of medical personnel's expectations of dental hygienists' legal roles.

Key Words: Dental hygienists, Awareness, Medical technicians, Medical personnel

Received: October 6, 2018 **Revised:** October 25, 2018 **Accepted after revision:** October 28, 2018

†Correspondence to Myoung-Hee Kim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College of Health Science, Eulji University, Sanseong-daero, Seongnam 13135, Korea
Tel: +82-31-740-7492, **Fax:** +82-31-740-7352, **E-mail:** mhlee0327@gmail.com

I. 서론

‘치과위생사’라는 직종은 1913년 미국의 알프레드 폰스(Alfred Civilion Fones)가 창안한 개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 치위생학 교육의 창설자 지헌택 선생이 미시건대학교 치과대학 대학원에서 미국의 치과위생사와 치위생학 교육을 접하면서 치과위생사 도입의 계기가 됐다. 1965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기술수련원에서 수련과정을 거쳐 면허를 취득하게 하는 최초의 치위생학 교육이 이루어졌고, 1977년에는 단기고등교육기관인 전문학교에서 2년제 치과위생과가 생기면서 질적, 양적 성장의 전환점을 맞았다. 이때 생겨난 대학이 광주서원전문학교, 대구보건전문학교, 신구전문학교, 원광보건전문학교로 전국 4곳이다. 1994년에는 3년제 전문대학으로 전환되었고, 2002년에는 4년제 치위생학과가 최초로 신설되었다(강부월 등, 2013). 최근 대학교재개혁이 결과로 인한 폐교와 통합 및 신설을 반영하여 2018년 현재, 4년제 대학 27개와 3년제 대학 56개로 총 83개 대학에서 치과위생사를 양성하고 있다(<http://www.academyinfo.go.kr>).

치과위생사는 치과의사와 협업하여 치과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치과진료인력이다. 치과의사는 의료법에 준하여 법적업무와 권리를 보장받는데 반하여, 치과위생사는 현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법적업무범위가 규정된다. 역사적으로는 1963년 의료보조원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치과위생사를 비롯한 의료기사들의 면허제도가 도입된 후, 이 법에 의거하여 1971년에 최초의 치과위생사 면허취득이 이루어졌다. 이후 1973년 2월, 치과위생사를 현재의 의료기사로 규정한 의료기사법이 제정, 공포되었고, 의료보조원법은 폐지되었다(김설악 등, 2017).

이러한 역사적 흐름과 제도하에서 치위생 교육은 세부 학문분야별 교육의 내실화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고,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훈련과정을 구축

하기 위한 관련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Choi et al, 2017A; Park et al, 2018). 특히 임상치위생학은 2000년대 초반 이후, 이론과 술기 능력을 교육하기 위한 통합교과목으로서 치과위생사의 역할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임상 영역의 전공학문으로 자리매김하였고, 교육내용에 있어서도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임상에서의 술기 능력 향상을 위한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Han et al, 2009; Choi et al, 2017B).

최근 치과위생사 직종은 또 한번의 큰 역사적 과도를 겪고 있다. 2017년 7월 이후 시작된 치과위생사의 의료인화를 위한 ‘100만 대국민 서명운동’과 2018년 10월에 시작된 ‘치과진료보조 업무 법적 보장’에 관한 서명운동이 그것이다. 2015년 시행된 치과위생사 업무 범위에 대한 의료기사법의 개정으로 치과위생사들의 업무가 일부 조정되었지만 여전히 관련법안에서의 업무에 대한 의료행위가 논란이 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지 않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현실이다(Park et al, 2016). 이후 Choi et al(2016)이 보고한 임상치과위생사들의 의료기사법에 관한 인식 연구에서, 임상치과위생사들이 개정된 의료기사법에 대해 알고 있는 비율이 32.8%로 낮게 나타났다. 응답자 중 56.2%는 새로 개정된 의료기사법이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Kim et al(2016)은 치과위생사의 제도와 업무 관련 의료법 개정에 대한 요구도 조사에서 응답자의 92.5%가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이로 인해 법적 보호와 전문 치과위생사 제도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관련 법개정의 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 위 연구 모두 관련 법안의 인식 및 개정의 요구도를 조사한 것으로서, 현행 의료기사법에 의거하여 치과위생사의 구체적 업무 내용에 관한 법적 업무 여부에 관한 인식은 조사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래 치과위생사가 될 치위생학 전공 학생들이 인지하는 치과위생사의 세부적 법적업무범위와 의료인화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였다. 이는 교육에 있어서 학문체계 확

립과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로서의 활용 뿐만 아니라 의료인화를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되기 위함이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통계분석

본 연구는 2018년 3월 25일부터 4월 9일까지 약 2주간 치위생(학) 전공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서울 경기권 소재 5개 대학, 충남 5곳, 강원과 제주 각각 1곳으로 총 12개 대학의 치위생(학)과를 대상으로 하였고, 이 중 서울 경기권 소재 대학 2곳은 직접 방문에 의한 지면 설문을, 나머지 대학은 온라인 설문조사가 실시되었다. 총 371명이 설문에 답하였고, 이 중 통계적 신뢰성을 고려하여 불충분한 응답 34부가 먼저 제외되었다. 또한 학년에 따른 분석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비교적 적은 응답률을 보인 3년제 학제 재학생 39명을 추가로 제외하여 4년제 대학 298명의 치위생학과 재학생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설문문항은 총 21문항으로서 일반적인 특성 6문항, 치과위생사의 법적 직업 분류에 관한 인식 2문항, 의료기사법에 관한 인식 6문항, 의료인화에 대한 인식 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의료기사법에 관한 인식은, 학생들이 인식하는 치과위생사의 법적 업무범위 인식 여부와 업무범위의 적절성 등에 관한 것으로 이 중 치과위생사의 법적 업무 범위에 관한 문항은 다중 응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의료인화의 인식 문항은 의료인화추진에 관한 인식의 정도 및 동참의사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서 질문에 앞서 의료인과 의료기사의 법적 정의가 설명되어졌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든 변수는 범주형 변수로서 기술통계는 상대도수와 분율로 표기되었다. 치과위생사의 법적 업무범위에 관하여서는, 학년에 따른 항목별 업무와의 연관성을 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시행하였다. 의료인화 추진에 대한 정보 인지 경로에 관련하여서는 중복응답이 고려되어 분석되었고 비교의 용이

성을 위하여 분율이 표기된 막대그래프로 표현되었다. 전체적인 유의수준은 0.05로 적용되었으며, 모든 통계 처리는 R version 3.4.1 (R Development Core Team, Austria)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III.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전체 대상자 298명 중 약 96% (286명)가 여학생이었고, 학년별로는 3학년이 가장 많은 27.2%를 차지하였으나 비교적 균등한 학년별 분포를 보였다. 약 46%가 임상실습과 파트타임 등의 임상경험이 있는 것으로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study population

	N	%
Sex		
Male	12	4.0
Female	286	96.0
Grade		
Freshman	65	21.8
Sophomore	74	24.8
Junior	81	27.2
Senior	78	26.2
Clinical experience		
Yes	136	45.6
No	162	54.4
Awareness of legal scope for dental hygienists		
Awareness	185	62.1
Unawareness	113	37.9
Awareness of medical personnels		
propulsion		
Awareness	279	93.6
Unawareness	19	6.4
Join the petition drive for medical personnels		
Yes	157	52.7
No	141	47.3

Note. All Persons 298.

All values were presented as n (%) for categorical variables.

로 나타났으며, 치과위생사의 법적 업무범위에 대한 인지여부로는 62%가 알고있다고 응답하였다. 의료인화의 추진에 관해서는 279명의 학생들이 “알고 있다”로 응답하여 93.6%의 높은 인지율을 보였다. 치과위생사의 의료인화를 위한 정책적 활동의 동참 여부에 관한 질문에서는 53%가 대국민 서명운동 등에 동참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Table 1).

2. 의료인화추진에 관한 인식 경로

의료인화의 추진에 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279명의 치위생학과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인지 경로에 관한 질문이 주어졌다. 중복 응답이 고려된 상태에서 가장 많은 인지 경로로는 201명(72.0%) “학교”라고 응답하였으며, “인터넷”이 50.2%로 다음 순위를 차지하였다. 그 외 대한치과위생사협회(20.1%), 친구나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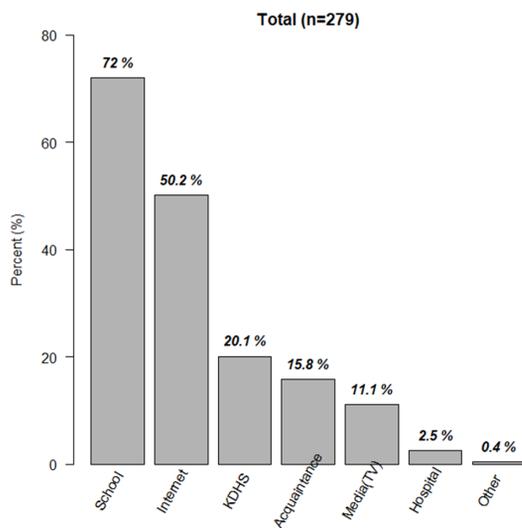


Fig. 1. Bar graph depicting the source of information on medical personnels propulsion among respondents with awareness of the drive for medical personnels (n=279, “Awareness” respondents in Table 1): schools (n=201), internet (n=140), KDHS; Korean dental hygienists association (n=56), acquaintance; friends or relatives (n=44), media; television and radio (n=31), hospital (n=7), and other (n=1).

변사람 등 지인(15.8%), TV나 드라마 등 인터넷을 제외한 매체(11.1%), 병원(2.5%) 그리고 기타(0.4%) 순으로 나타났다(Fig. 1).

3. 치과위생사의 법적 업무범위에 관한 인식

Table 2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치과위생사의 법적업무범위에 관한 치위생학과 재학생들의 인식 정도를 학년별로 나타낸 것이다. 총 12개 항목이 조사됐으며, 빈도와 백분율을 보기 위해 각 항목을 개별 변수 처리하여 0 (아니오)와 1 (예)로 전산 입력하였다.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것은 “구강보건교육”과 “스케일링”으로 전 학년에 걸쳐 치과위생사의 법적업무로 높게 인식하였다. “치면열구전색”은 1학년에서는 26.2%를 보인 반면, 4학년 학생들은 78.2%가 치과위생사의 업무로 응답하였다. “치아 본뜨기”와 “불소도포”는 전체 83%, 89%가 법적 업무로 인식하였으며, 학년별로는 고른 분포를 보였다. “임시부착물 장착 및 제거”와 “교정용 호선의 장착 및 제거”는 각각 57%와 55%의 인지율을 보였고, “임시충전”은 약 39%로 비교적 낮은 업무인지율을 보였다. “임시치관제작”은 144명(48.3%)이, “환자기록(charting)”은 71.8%가, “충치 치료”는 12.1%가 치과위생사의 법적 업무 범위라고 응답하였다(Table 2).

반면, 조사된 12개 항목에 관하여 1번(“구강보건교육”)부터 9번(“불소도포”)까지를 치과위생사의 법적 업무범위로, 10번(“임시치관제작”), 11번(“환자기록”), 12번(“충치 치료”) 항목은 법적업무범위가 아닌 것으로 인지한 응답자는 전체 대상자 중 5명(1.7%)으로 나타났다, 5명 모두 4학년 학생들이었다.

IV. 고찰

본 연구는 치위생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을 통하여 학년에 따른 치과위생사의 법적 업무 범위에 관한 인식과 의료인화 추진에 관한 인지

Table 2. Awareness of legal scope of practice for dental hygienists according to current medical technicians, etc. act

	Total (N=298)	Freshman (N=65)	Sophomore (N=74)	Junior (N=81)	Senior (N=78)	p-value
1. Oral health education	292 (98.0)	64 (98.5)	72 (97.3)	78 (96.3)	78 (100)	0.39
2. Sealant	194 (65.1)	17 (26.2)	50 (67.6)	66 (81.5)	61 (78.2)	<0.05
3. Scaling	291 (97.7)	64 (98.5)	72 (97.3)	79 (97.5)	76 (97.4)	0.97
4. Radiography	251 (84.2)	55 (84.6)	67 (90.5)	72 (88.9)	57 (73.1)	0.01
5. Temporary filling	115 (38.6)	22 (33.9)	26 (35.1)	26 (32.1)	41 (52.6)	0.03
6. Attachment and remove of temporary crown	170 (57.1)	41 (63.1)	36 (48.7)	37 (45.7)	56 (71.8)	<0.05
7. Dental impressions	247 (82.9)	53 (81.5)	60 (81.1)	68 (84.0)	66 (84.6)	0.92
8. Attachment and removal of orthodontic wire	163 (54.7)	36 (55.4)	33 (44.6)	42 (51.9)	52 (66.7)	0.05
9. Fluoride application	266 (89.3)	56 (86.2)	67 (90.5)	74 (91.4)	69 (88.5)	0.75
10. Temporary crown	144 (48.3)	39 (60.0)	42 (56.8)	51 (63.0)	12 (15.4)	<0.05
11. Charting	214 (71.8)	48 (73.9)	55 (74.3)	64 (79.0)	47 (60.3)	0.06
12. Cavity treatment	36 (12.1)	15 (23.1)	10 (13.5)	3 (3.7)	8 (10.3)	<0.05

Note. All values were presented as n (%). Multiple responses considered. p-values were calculated by chi-square test.

정도를 알아보고자 시행되었다. 결과에 따르면 학년별 표본수는 고른 분포를 보였고, 응답자의 대부분이 현재 진행중인 의료인화의 추진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 현행법에 의거한 치과위생사의 법적업무범위에 관한 주관적 인지정도로는 약 62%가 “알고 있다”로 응답하였다. 실제, 12개 세부항목별 업무범위 인지율은 학년별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주되게 알아보고자 한 내용은 예비치과위생사인 치위생학과 재학생들이 진료현장에서의 법적 업무범위에 관하여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조사된 12개의 문항 중 치과위생사의 합법적 업무는 총 9개로서, 구강보건교육, 치면열구전색(Sealant), 스케일링, 방사선 촬영, 임시충전, 임시부착물 장착 및 제거, 치아 본뜨기, 교정용 호선의 장착 및 제거, 그리고 불소 도포이다. 나머지 “임시치관제작”, “환자 기록(Charting)”, “충치 치료”는 관련 현행법에 의하면 위법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이 항목들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48.3%, 71.8%, 12.1%가 각각의 항목에 대해 치과위생사의 법적 업무로 인식하였다. 특히 “임시치관제작”에 관하여서는 학년별로 유의한 인지율의 차이를 보였는데(p-value, <0.05), 1~3학년은 평균적으로 약 60%가 치과위생사의 법적 업무로

인식하였고, 4학년은 15.4%가 법적 업무라고 응답하였다.

2003년 대한치과위생사협회에서는 치과위생사 405명을 대상으로 실제 진료실내에서의 수행업무 현황을 조사하였는데, 임시치관제작의 경우 응답자의 66.2%가 수행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박정란 등, 2004), 2017년 조사에서는 치과위생사에 의한 임시치관제작 수행률이 90.1%로 나타났다(한양금 등, 2017). 본 연구에서 71.8%의 치위생학과 학생들이 환자기록의 업무가 치과위생사의 법적 업무로 인식하였는데, Park et al(2010)의 연구 결과, 실제 임상에서는 89.5%의 치과 병·의원 개원 치과의사들이 치과위생사에게 위 업무를 허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조사되지 않은, 법적인 업무 범위가 아닌 항목으로서 치위생학 술기교육과정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대표적 행위로 치주낭 측정과 치근활택술이 있다. 2017년 대한치과위생사협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치과의사 419명을 대상으로 치과위생사가 수행하는 업무 현황을 확인한 결과, 치주낭 측정과 치근활택술이 각각 82.3%, 66.8%로 치과위생사에 의해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양금 등, 2017).

2015년에 개정된 의료기사법에 따르면 치과위생사

의 법적 업무 범위는 ‘치석 등 침착물 제거, 불소도포, 임시 충전, 임시 부착물 장착, 부착물 제거, 치아 본뜨기, 교정용 호선의 장착, 제거, 그 밖에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이며, 의료법 제 37조 제 1항에 따라 구내 진단용 방사선 촬영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법안이 과거 대비 구체적으로 수정되었으나 여전히 임상에서 실제 수행하고 있는 다수의 업무에 대해서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법령에 근거하여 명시된 업무에 비해 실제 진료실 내에서 수행하는 업무와의 괴리가 크게 존재하여 심도 있는 정책적 검토의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신보미 등, 2018).

본 연구결과에서도 많은 치위생학과 학생들은 여러 매체와 의료관계법규와 같은 교과목을 통하여 일부 법률적 정보가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치과위생사의 법적업무범위에 대해서 대부분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였다. 표로 명시하지 않았지만, 총 12개 조사된 항목들에 관하여 법적업무여부를 모두 맞춘 학생은 298명 중 5명뿐이었다. 5명은 모두 4학년 학생으로 조사되었는데, 4년제 학제의 경우 대부분의 치위생학과에서는 고학년에 의료관계법규와 관련된 과목을 이수하므로 교육에 의한 효과로 보여진다. 예비 치과위생사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법적 업무 범위에 관한 연구가 없기에 비교에 있어 한계가 존재하나, 치위생(학)과 교육과정의 특정과목에서 많은 시간이 할애되어 학습되고 있고, 치과 병·의원 임상실습 등을 통하여 현장에서 실제 수행하고 있는 치과위생사 업무들이 자연스럽게 노출된 결과로 보여진다.

본 연구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의료인화 추진에 관하여서는 대부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의료인화 서명운동의 동참은 절반에 가까웠다. 치과위생사의 의료인화에 관한 정보 경로로는 약 72%가 “학교수업을 통해서”로 응답하였다. 치과위생사의 더 많은 참여와 관심이 절실한 시점에서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의 적극적인 홍보와 노력이 필요함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결과로 여겨진다.

연구의 한계점으로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현행법에 의한 치과위생사의 법적 업무 범위를 모두 포괄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2017년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진료현장에서 높은 수행률을 보인 “도포마취”, “환부 소독”, “치은 압박”, “치주 및 외과수술의 보조” 등이 해당된다(한양금 등, 2017). 또한 업무범위를 규정한 법률용어로서, “환자 기록”과 같은 일부 용어들의 표현이 정확치 않아 응답자로 하여금 혼선을 줄 수 있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예비 치과위생사에 의한 세부적 법적업무범위의 인식도와 관련한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시기적으로 가장 적절한 사회적 논제를 반영하였다는 것에 큰 의의를 두고자 한다. 치과위생사의 업무에 대한 법적 보장은 매우 적법하고 안전한 치과의료 실현과 효율적인 치과의료서비스 생산 및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시의성을 반영하여, 본 연구결과가 의료기사법 개정에 있어 하나의 근거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 향후 치과위생사의 법적 업무 범위를 포괄적으로 조사하고, 임상 치과위생사 및 치과의사로 대상자를 확대하여 비교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V. 감사의 글

이 논문은 2018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임(No. 2018017261).

VI. 참고문헌

- 강부월, 강재경, 강현경, 구인영, 권현숙, 김지영 등. 최신 치위생학개론: 치과위생사를 위한 입문서. 서울: 지성출판사; 2013.
- 김설악, 김영숙, 류다영, 이승훈, 전성희, 강용주 등. 공중구강보건학. 서울: 대한나래출판사; 2017. 쪽 15-7.
- 박정란, 류정숙, 최부근, 한수진, 허선수, 황선희. 치과위생사

- 의 업무 확장에 관한 조사연구. 서울: 대한치과위생사협회; 2004.
- 신보미, 배수명, 신선정, 이효진. 우리나라 치과보조인력 정책의 현황 및 과제. 서울: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구강보건정책연구회; 2018.
- 한양금, 김응권, 김승희, 배수명, 양진영, 유지수 등. 치과위생사의 실제 업무와 법적 업무에 관한 치과 의사의 견해. 서울: 대한치과위생사협회; 2017.
- Choi YK, Han YK, Bae SM, Kim J, Kim HJ, Ahn SY, et al. Study on current curriculum analysis of clinical dental hygiene for dental hygiene students in Korea. *J Dent Hyg Sci* 2017A;17(6):523-32.
- Choi YK, Lim KO, Han YK, Bae SM, Shin BM, Ahn SY, et al. Study on clinical dental hygiene in Korea based on analysis of clinical dental hygiene curriculum of Fones school in the United States. *J Dent Hyg Sci* 2017B;17(2):123-33.
- Choi YR, Seo HY, Ryu EJ, Choi EM. Dental hygienists' awareness of medical technician jurisprudence. *J Dent Hyg Sci* 2016;16(6):495-501.
- Han SY, Kim NH, Yoo JH, Kim CS, Chung WG. Current status of clinical dental hygiene education based on dental hygiene process of care. *J Dent Hyg Sci* 2009;9(3):271-8.
- Kim SI, Jun MK, Lee SM. Needs of revision of dental hygienist-related medical law. *J Korean Soc Dent Hyg* 2016;16(5):677-85.
- Park JH, Kim MS, Cho JW. Dentists' opinions for dental hygienists' roles in Korea. *J Korean Acad Oral Health* 2010;34(1):88-97.
- Park MS, Kim J, Kim HJ, Bae SM, Youn MS, Jang YJ, et al. Introduction to dental hygiene. Seoul: Daehannarae; 2016. pp.202-25.
- Park SK, Lee GY, Jang YE, Yoo SH, Kim YJ, Lee SH, et al. Suggestion of learning objectives in social dental hygiene: oral health administration area. *J Dent Hyg Sci* 2018;18(2):85-96.